

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578호 2018. 09. 27.(목)

고 시

○ 사천시 고시 제171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—————2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사천시 / 편집 : 공보감사담당관 / ☎ 831-2215 / FAX 831-6012

사 천 시 공 보

제578호

고 시

사천시 고시 제 2018-171 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8. 9. 27.

사 천 시 장

1. 점용·사용 승인번호(승인일자) : 제2018-5호 (2018. 9. 17.)
2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를 받은 자의 성명·주소
 - 성 명 : 사천시장(해양수산과장)
 - 주 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3. 점용·사용의 목적(공사내용)
 - PE부잔교형 접안시설 설치
4. 점용·사용(공사)의 장소
 - 경남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4-2번지선 공유수면
5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
 - 신고번호 : 제2018-9호
 - 공사기간 : 2018. 9. 19. ~ 2018. 10. 18.
6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일자 : 2018. 9. 18.
7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 조건
 - 점용·사용 승인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.
 - 실시계획 신고확인증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,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합니다.